



[별첨] - 분과위원회 기조 발제자료

청각장애인 등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등 국고부담 방안

2019. 12. 12.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목차-

- I. 수어통역 비용 등을 둘러싼 규범 충돌의 상황과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1. 기존 제도: 당사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소송비용으로서 수어통역, 속기, 녹음 비용 등
 2. 수어통역 비용의 국고부담화의 근거가 되는 신법, 특별법 등의 적용
 - 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미국 장애인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나.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 다. 한국수화언어법
 3. 규범 충돌 가능성과 그 개혁방안에 관한 기존의 검토내용
 - 가. 장애인사법지원 가이드라인(2013. 7.)
 - 나. 제1기 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 보고서(2013. 1. 8.)
 - 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2018. 9. 19.)
 - 라. 장정숙 의원 민사소송법 개정안(2019.1. 29.)
 - 마. 제2기 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 검토(2019. 9. 27./ 2019. 10. 25.)
 4. 규범충돌 상황에 대한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한 해결의 한계와 입법적 해결 필요성
 - 가. 규범충돌과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한 해결: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통역’ 개념에서 ‘장애인을 위한 통역’ 제외
 - 나.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한 해결방안의 한계
 - 다. 입법적 해결 필요성
- II. 입법의 원칙과 쟁점사항들
 1. 소송구조를 통한 해결이 적절한지 여부
 2. 입법형식: 대법원 규칙, 재판예규의 필수적 개정 필요성과 법률개정의 병행 여부
 3. 속기, 녹음과 문자통역, 수어통역 영상 녹화의 경우 비용부담 문제(포함시킴)
 - 3-1. 통역 수준에 이르지 않은 다양한 의사소통 문제 일반에 관한 입법 필요성
 4. 인적 범위: 당사자, 증인, 감정인, 전문위원, 소송대리인 등 변론 참여자 전체
 5. 방청인 수어통역 등 의사소통지원 문제를 포함한 별도 입법안 추가제시
 6. ‘장애로 인한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를 특징하는 용어의 선택 문제



III. 민사절차(준용되는 가사, 행정 절차 등 포함) 수어통역비용 등 국고부담화 입법안

1. 수어통역비용 등 국고부담 원칙과 그 지급기준에 관한 개정안

가. 법률개정안과 민사소송규칙 개정을 병행하는 방안

1) 장정숙 의원안

2) 발제자의 수정제안(민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규칙 개정안)

나. 법률개정 없이 대법원규칙(민사소송규칙)만 개정하는 방안

2. 민사절차의 소송비용 개념에서 수어통역비용 등을 제외하는 개정안(예납의무 배제 포함)

가. 민사소송비용법 개정안

나. 민사소송규칙 제19, 33조(예납 관련),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 개정안

IV. 형사절차 수어통역비용 등 국고부담화 방안

1. 형사소송비용에서 수어통역비용 등이 제외됨을 명시하는 개정안

가. 법률 개정안

나.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법률개정 없이 시도 가능함)

다. 형사소송규칙 제122조2 개정안(재정신청 소송비용 부담 관련)

2. 수어통역비용 등 지급기준, 절차에 관한 개정안의 제안 필요성

V. 청각장애 등 의사소통 장애 일반에 관한 입법안(방청인 문제 포함)

1. 법원조직법 개정안

2. 대법원 규칙 개정안

가. 장애인사법지원규칙 제정(안)

나. 민사소송규칙, 형사소송규칙 등 개정안



-본문-

I. 수어통역¹⁾ 비용 등을 둘러싼 규범 충돌의 상황과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이 부분은 사법정책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참고자료에서 기존논의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어서, 이 보고서에서는 간략히 핵심적 내용 위주로 소개, 검토함.

1. 기존 제도: 당사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소송비용으로서 수어통역, 속기, 녹음 비용 등

- 민사소송절차 등의 경우 소송비용에 통역인 비용을 포함시키고 당사자에게 부담시킴(재판유상주의). 신청인 등이 비용을 예납했다가(민사소송법 제116조, 민사소송규칙 제19조) 나중에 패소자 부담원칙에 따라 최종 비용부담자가 결정됨(민사소송법 제98조).
- 수어통역이라는 용어는 민사절차 상 소송비용에 관한 법령(민사소송비용법 제 4, 6, 11조, 민사소송규칙 제19조 등)에 나타나지 않음. ‘통역’, ‘통역인’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만 사용되고, 외국인 통역과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을 구별하지 아니함.
- 속기, 녹음, 녹화도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함(민사소송규칙 제19조). 동시적인 문자통역을 위한 실시간 속기, 수어통역 영상 녹화와 같은 ‘장애인 의사소통을 위한 속기, 녹음, 녹화’와 ‘사후적 조서 작성 목적의 속기, 녹음, 녹화’를 구별하지 않음.
- 형사소송절차의 경우 수어통역비용 등은 국고부담이 원칙이나, 형사소송비용을 피고인 등에게 부담시키기로 법원이 결정한 경우(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등) 그 형사소송비용의 항목으로 통역 비용이 포함될 수 있음(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실무관행상 형사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서 현재는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장래에 이러한 실무관행이 변화하는 경우 형사절차에서도 수어통역비용 등을 장애인 피고인 등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수어통역비용 등에 관한 국고 부담 원칙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1) 수어가 한국수화언어의 줄임말이므로(한국수화언어법 제2조 제1항) ‘수화통역’이라는 용어도 잘못된 것은 아니나, 한국수화언어법 부칙<제13978호,2016.2.3.> 제2, 3조에서 ‘수어통역’으로 법령상 용어를 통일하고 있어 수어통역이라는 용어로 사용함.



- 다만 실질적인 차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후의 신법(新法)의 지위를 갖는 조항을 신설하는 입법을 통하여 형사소송의 경우는 민사소송과 달리 수어통역 비용 등도 형사소송비용으로 피고인 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지도 미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형사실무상 거의 사문화된 피고인 등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을 활성화시키자는 견해가 있기 때문임. 이와 관련하여 증인 등의 여비는 비교적 소액이어서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실무상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인영·필적 감정이 빈번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비교적 고액의 감정료 등을 중심으로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활용함이 상당하다는 견해²⁾가 있음. 이러한 견해에 의할 경우 수어통역비용 등은 감정료 만큼의 고액에는 이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 형사소송비용 부담제도를 활성화시키더라도 이를 굳이 형사소송비용에 포함시킬 실익이 크지 아니함.
- 따라서 이하에서는, 민사절차와 형사절차에 동일하게 소송비용에서 수어통역 비용 등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제시함.

2. 수어통역 비용의 국고부담화의 근거가 되는 신법, 특별법 등의 적용

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미국 장애인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2008. 4. 11. 시행) 상 편의제공의무의 한 내용으로 사법절차에서의 수어통역 등이 포함됨(제26조, 동법 시행령. 그런데 편의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부담하고 당사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임.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입법적 모델이 된 미국 장애인법은 장애인 편의제공에 대하여 당해 서비스에 대해 원래 부과되는 요금 외에 장애인 편의제공에 별도의 추가적 요금(surcharge)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명문화해놓고 있음.

나.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 한국이 비준, 동의하여 국내법적 효력(헌법 제6조 제1항)을 가지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편의제공의무를 규정. 편의제공비용 문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이해되나, 특징적인 것은 사법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 참여자에 대한 편의제공의무(제13조)를 규정하여 편의제공 대상자 범위가 포

²⁾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II), (2014), 525면.



괄적임을 명시함.

다. 한국수화언어법

- 한국수화언어법은 수어를 국어와 같은 지위에 놓고 있고(제1조), 사법절차에서의 수어통역을 제공할 의무를 명문화고 있음(제16조). 위 규정은 마찬가지로 국가의 비용부담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해됨.
- 특히 수어에 국어와 같은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외국인 통역’과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등을 차별적으로 규율할 필요성과 정당성의 근거가 됨. 즉 통역 비용 부담 문제에 있어, 수어통역을 외국인 통역과 달리 취급해 더 두텁게 보장해야 하는 유력한 법적 근거가 됨.

3. 규범 충돌 가능성과 그 개혁방안에 관한 기존의 검토내용

가. 장애인사법지원 가이드라인(2013. 7.)

“앞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위 각 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수화통역 비용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한 내용으로 그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아직 국고 부담에 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소송구조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법원행정처,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3. 7.), 68-69면)

나. 제1기 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 보고서(2013. 1. 8.)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취지 및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수화통역인 비용은 편의제공의 영역에 포함시켜 궁극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따라서 편의제공과 관련한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집행근거와 절차의 문제는 전문심리위원규칙 제4조와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 제9조 내지 제13조,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처리 예규 제10조를 참조하여 대법원 규칙 및 예규를 제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만, 대법원 규칙과 예규의 제정을 통하여 수화통



역료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세부절차 등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실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소송구조상 무자력 요건을 최대한 완화시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안승훈 판사, “수화통역인 비용 부담의 문제”, 제1기 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 2013. 1. 8. 회의 발제자료: 전문은 사법정책분과위 제1차 회의 참고자료 참조)

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2018. 9. 19.)

“따라서 민사소송 등에서 수어통역 지원 비용을 신청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법원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이에 따라 각 법원은 청각장애인에게 비용의 부담을 지우지 않고 수어통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민사소송 및 가사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 또는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2018. 9. 19.자 18진정0384900 결정)

라. 장정숙 의원 민사소송법 개정안(2019. 1. 29.)

<기존 민사소송법 제116조>

민사소송법 제116조(비용의 예납)

- ①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 ②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이 제안된 제3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통역·속기·녹음 등에 드는 비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372, (2019. 1. 29.)[계류 중]].

마. 제2기 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 검토(2019. 9. 27./ 2019. 10. 25.)

- 차성한 판사의 검토 내용 발제로 두 차례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그 핵심적 내용을 이 보고서에서 요약(일부 수정·보완)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인용하지 아니함(보다 자세한 검토내용은 사법정책분과위 제1차 회의 참고자료 참조).

4. 규범충돌 상황에 대한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한 해결의 한계와 입법적 해결 필요성

가. 규범충돌과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한 해결: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통역’ 개념에서 ‘장애인을 위한 통역’ 제외

- 법원의 민사절차, 형사절차에서 수어통역 비용 등을 외국어 통역과 마찬가지로 보아 그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부담시킬 가능성을 인정하던 기존의 입법상황에서, 사법절차에서의 수어통역 비용 등을 다른 편의제공과 마찬가지로 국고부담으로 해야 하는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져서 해석 차원에서 규범적 충돌이 발생한 상황임.
- 다만 기존에 수어통역 비용 등을 규율하는 법원 절차와 관련된 법령상 수어통역 등을 특별히 구분하여 규정하지는 않았고, 외국인 통역을 포함한 통역, 통역인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썼기 때문에, 해석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통역인 범위에서, 수어통역 등은 빠진다고 해석하면 법률의 개정 없이도 해석을 통한 규범조화적 해결이 가능함.

나.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한 해결방안의 한계

- 2011-2012년에 이미 위와 같은 해결가능성이 법원 내부에서 검토되었으나 구체적인 예산의 근거가 될 입법적 조치가 없는 등의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해석론을 통한 해결이 되지 않음. 그런 상황에서 2018년에 앞서 소개한 국가인권위의 수어통역비용의 국고부담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결정이 나옴.
- 해석론을 통한 해결은 한계가 커보이고 입법적 해결이 필요함.



다. 입법적 해결 필요성

- 당초 장애인차별금지법, 수화언어법이 제정되거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비준, 동의절차를 거칠 때, 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편의제공에 관한 기존의 법원의 절차 관련 법령들의 제개정이 함께 검토되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없어 충돌상황이 발생함. 늦었지만, 위 작업을 지금이라도 진행해서 규범조화적 해석에 기반한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음,

II. 입법의 원칙과 쟁점사항들

1. 소송구조를 통한 해결이 적절한지 여부

- 소송구조는 근본적으로 경제적 요건의 심사와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라는 승소가능성 요건을 매개로 이뤄짐. 반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은 의사소통 상 수어통역 등 편의제공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인에 대하여, 그 경제적 수준, 승소가능성과 무관하게 제공되어야 함. 장애인의 경우 위 두요건과 무관하게 항상 통역비용을 소송구조 해주는 해결방식은 소송구조 원리에 반함.
- 소송구조를 통한 해결방안은 과도기적 방안으로서 입법적 해결에 필요한 기간 동안의 잠정적 임시방편으로 제안된 것임. 이미 그러한 논의가 시작된 때로부터 6~7년이 흐른 상황에서 소송구조 제도를 통한 해결은 바람직하지 않음.
- 결론적으로 소송구조를 활용하는 방식은 입법적 해결방법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여, 이 글에서는 검토하지 아니함. 다만,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고려하여 경제적 요건을 비장애인보다 지금보다 더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음. 다만 그것은 수어통역 비용에 한정된 논의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소송구조 제도 전반을 다루는 주제로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해 보임.

2. 입법형식: 대법원 규칙, 재판예규의 필수적 개정 필요성과 법률개정의 병행 여부

- 소송절차의 세부적인 부분의 경우 법관들이 대법원 규칙, 재판예규 수준의 소송실무와 밀접한 하위 입법을 법률보다 훨씬 빈번히 참조함. 따라서 대법원 규칙, 재판예규의 개정이 필수적임.
- 장정숙 의원안처럼 법률수준의 개정을 하고, 이를 토대로 대법원 규칙, 재판예규 등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시비가 없는 바람직한 방법임. 따라서

법률개정안도 제시함.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령상 소송비용의 대상이 되는 통역 범위에서 수어통역을 제외시키는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므로, 그런 규범조화적인 법률해석으로 법률 간의 충돌문제는 해결하고, 대법원 규칙, 재판예규만 개정하는 옵션도 가능한 방안이기는 함. 더구나 국회 입법이 아직 안되었다는 것을 핑계로 대법원 규칙, 재판예규를 통한 해결이 가능한데 이를 마냥 지연, 유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따라서 대법원 규칙, 재판예규 개정안은 법률개정과 병행되면 가장 좋지만, 설사 법률개정이 없더라도 대법원 규칙, 재판예규만 개정해도 문제해결이 가능한 형태로 제시함.

3. 속기, 녹음과 문자통역, 수어통역 영상 녹화의 경우 비용부담 문제(포함시킴)

- 장정숙 의원안은 수어통역 외에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속기, 녹음 비용도 국고부담으로 하는 내용을 넣고 있음. 기존 검토는 수어통역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속기, 녹음까지 이참에 함께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속기는 통상 사후적 조서작성을 위해 사용되나,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문자통역을 위한 실시간 속기가 유용함. 이는 수어통역과 병행해서 혹은 수어통역을 대체하여 이뤄질 수도 있음. 문자통역을 위한 실시간 속기는, 실무상 별도의 통역인 지정 없이 법원에 근무하는 속기사 인력을 활용하여 별도의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는 속기, 녹음 비용도 예납할 소송비용에 포함시키고 있음. 수어통역과 병행하여 또는 수어통역을 대체하여 문자통역이 활용되는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점, 수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도 적지 않은 점, 수어통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는 문자통역과 수어통역이 병행되는 것이 적어도 사법절차에서는 원칙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자통역을 위한 실시간 속기의 비용 문제도 이참에 해결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 문자통역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제공으로 인정되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해야 하는 점은 다를 바가 없음.
- 다만 속기사를 이용한 속기 방식의 문자통역은 민사소송법이 당초 예상한 속기, 즉 조서작성방식의 속기와는 달라서 그 구체적 근거, 절차에 관한 규율이 현재 소송절차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임. 비용 부담 문제와 별개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데, 이는 바로 다음 항목에서 통역 수준에 이르지 않은 다양한 의사소통 지원방안의 별도의 입법 필요성을 논의할 때 같이



검도함.

- 변론 녹음의 경우에도 그것이 장애인의 의사소통 상 편의제공으로 포섭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비용은 국고부담이 원칙임. 특히,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04-5)(이하 ‘통번역 예규’라 한다) 상 형사 피고인에 대한 외국어 통역에 대한 녹음을 의무화하고 있는 조항은 장차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의 경우에는 녹화 형태로 의무화될 필요가 있음. 민사절차에서도 그 수어통역 정확성 담보를 위하여 영상녹화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필요함. 민사소송규칙 제37조는 녹음에 준하여 변론 영상을 포함한 녹화의 경우에도 비용이 필요한 경우 예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녹화가 수어통역, 문자통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면 이는 편의제공의 한 내용으로서 그 비용을 국고부담화하는 것이 타당함.
- 장애인 의사소통과 관련된 속기, 녹음 비용의 국고부담화 문제도 포함하여 입법안을 제시함. 이 보고서에서 “수어통역비용 등”이라고 하여 “등”이라는 표현을 덧붙여서 사용하는 것은 위와 같이 속기, 녹음, 녹화 비용 문제를 포함한다는 의미임.
- 법원 속기사에 의한 문자통역의 경우, 사후적 조서작성에 익숙해진 속기사 입장에서 자주 있지 않는 문자통역을 위해 필요한 실시간 속기 능력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 녹음물에 의지하여 사후적 조서작성이 가능한 것과 달리 실시간으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체력 소모가 크다는 점, 그런 점에서 2인 1조에 의한 문자통역을 위한 실시간 속기제도나 휴식시간의 보장 등이 중요할 수 있다는 점 등의 한계를 지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원 속기사들 중 일정 비율의 속기사들을 미국처럼 법원의 공식 속기사(Official court reporter)와 달리 동시적인 의사소통에 종사하는 실시간 문자통역인(CART³) provider/interpreter)으로 따로 육성하는 정책이 시급함. 이 문제는 이 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하였으나 추후에 정책적 과제로 삼아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음⁴⁾.

3-1. 통역 수준에 이르지 않은 다양한 의사소통 문제 일반에 관한 입법 필요성

-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농자, 아자를 위한 통역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 지원 중 하나의

3) Communication Access Realtime Translation의 약자임.

4) 미국 법원의 실시간 문자통역인(CART provider/interpreter)에 대하여는 차성안, “장애인의 사법(司法) 서비스 접근권 입법방안-법원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제53집, 법원도서관 2011, 24면 이하 참조.



- 방식에 불과함.
- 청각장애인 중에는 수어를 아예 구사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여 구화(口話)나 필담(筆談), 청각장애인이거나 언어장애인이 스스로의 의사를 컴퓨터 키보드와 모니터 혹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문자입력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 물질을 통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도 존재함. 중증의 뇌성마비나 기타 뇌병변 장애,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완대체 의사소통 보조기구나 말을 알아듣는 가족이나 지인, 전문가 등의 통역인 외의 의사소통 조력인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기본적인 청력과 언어능력이 장애라고 부를 수준에 달하지는 않았지만 아스퍼거 증후군, 조울증 내지 양극성 정동장애, 발달장애 등과 같은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진술조력인이나 기타 의사소통이 가능한 안정적인 환경의 제공 등이 중요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의 사법절차에서의 편의제공 규정에 따라 다양한 의사소통 지원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되기는 하나 소송절차법령에서 그 구체적 의사소통 지원방식이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어 재판실무 상 제대로 그러한 지원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음. 따라서 다양한 의사소통 지원 수단의 제공에 관한 일반 규정을 소송절차법령에 신설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있음.
 - 속기사를 속기를 통한 문자통역도, 민사소송법상 속기 개념의 확대된 해석을 통해 포섭할 여지가 있으나, 그 근거와 절차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어, 문자통역에 관하여도 별도의 입법이 필요함.
 -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통역 수준에 이르지 않은 다양한 의사소통의 근거와 절차에 관한 조항을 별도 입법안으로 제시함.

- 4. 인적 범위: 당사자, 증인, 감정인, 전문위원, 소송대리인 등 변론 참여자 전체**
- 수어통역비용 등의 국고부담을 소송당사자(민사의 원, 피고나 형사의 피고인, 검사 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함)에 한정하고, 증인, 감정인, 전문위원, 소송대리인 등에게는 수어통역비용 등을 계속 부담시킬지,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는 그 소송상 지위를 가리지 않고 국고에서 수어통역비용 등을 부담할지가 문제됨.

※ 주의사항: 소송당사자는 장애 관련 법령이나 문헌에서 장애인의 가족이나 후견인, 대리인 등과 장애인 본인을 구별하는 의미에서 “장애인 당



사자”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의 ‘당사자’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음.
이하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소송당사자라는 표현을 사용함.

- 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편의제공의 일반적 근거규정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6조 제4항에서는,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이라고 규정하는데, “이용”의 개념이 소송당사자로서의 소송상 지위에 국한될지는 의문임.
-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사법에 대한 접근) 제1항은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지 위하여”라고 하여, 사법절차상 편의제공의 대상자가 소송 당사자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증인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형태의 직·간접적 참여자까지 확정되는 것을 명확히 함.
-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1항도 “변론⁵⁾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하여, 통역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음. 소송비용에 관한 법령상으로도, 소송비용 부담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소송당사자인 경우와 증인, 감정인, 소송대리인, 전문위원인 경우 등을 구별하고 있지 않음.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편의제공 비용은 당해 서비스 제공자(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용자, 교육기관 등)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을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은 인정하는 조문은 존재하지 않음.
-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참여하는 지위에 따라 소송비용 국고부담화 여부를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를 야기함. 소송당사자가 장애인인데, 증인이 비장애인인 경우, 소송당사자가 장애인이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소송대리인에게 장애인인 증인 신문을 맡긴 경우, 소송당사자가 비장애인이나 증인이 장애인인 경우, 소송당사자가 실제 수어통역 등 의사소통 편의제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등등 세분화된 기준이 필요해짐.
-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국고부담화로 진행되는 다른 절차와 달리 사법절차에서만 참여자의 지위에 따라 국고부담이 아니라 제3자에게 그 비용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실질적 이유도 찾기 어려움. 위와 같은 차별적 입법 시도는 장애인 당사자나 단체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나중에 위와 같은 법령, 규칙, 재판예규의 적법성에 대한 소송이나 헌법재판 등 법적 분쟁을 불필요하

5) 이 경우 통역이 필요한 변론의 범위는 심문(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항 참조)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변론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임. 그렇지 않은 경우 심문에서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이 참석하는 경우 통역에 관한 근거 규정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음.



게 야기할 가능성이 큼.

- 이 보고서에는, 참여자의 지위와 무관하게 전체 수어통역비용 등을 국고부담화하는 입법안을 제시함. 다만 이미 앞서본 법령에서 그 범위가 소송당사자에 국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어 이를 입법안에서 반복하지는 않음.

5. 방청인 수어통역 등 의사소통지원 문제를 포함한 별도 입법안 추가제시

- 방청인에 대한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의 비용부담도 국고부담으로 명시할지가 문제됨. 청각장애인 방청인 수어통역, 문자통역 문제는 그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전에 방청인 수어통역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제공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방청인의 범위를 제한할지 말지 등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임.
- 과거, 일명 도가니 사건, 즉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서 청각장애인 방청인의 수어통역을 초기에 거부하여 논란이 된 사례가 있어, 광주지방법원에서 “청각장애인의 법정 방청을 위한 수화 통역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여 이 문제를 부분적이거나 해결함. 이계진 의원이 청각장애인 재판 방청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적도 있음(의안번호 174598, 제출일 2006. 7. 10). 다만 현행 법원 실무상 방청인 수어통역을 거부한 사례는 다시 발견되지는 않고 있어, 광주지방법원 외에서도 절차를 거쳐 허용해주는 것이 아닌가 추측됨. 정확한 것은 실태조사가 필요함.
- 이 보고서에서는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된 과제인 방청인 수어통역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함. 방식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사법절차에서의 편의제공에 관한 포괄적 조항을 법원의 사법절차 일반에서 구체화시키는 조항을 법원조직법에 두는 법률수준의 입법안(독일 법원조직법의 입법방식 참조)과 대법원 규칙에 두는 대법원 규칙 수준의 입법안을 제시함. 이는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장애인권리협약 한국 정부보고서 심의 후에 장애인사법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규범화할 것을 권고한 것을 이행하는 의미가 있음.
- 미국 장애인법 규칙(regulation)에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제공해야 하는 대상을 장애를 가진 신청인(applicant) 외에, 참여자(participant), 공공의 구성원(members of the public), 동반자(companion)까지 확장함(28 C.F.R. § 35.160(a)(1).) 공공의 구성원(members of the public) 규정 취지 상 방청인에 대한 수어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이 인정된다는 판결도 내려짐[Prakel v. Indiana, 2015 WL 1455988 (S.D. Ind. March 30, 2015)].



- 헌법상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공개주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109조)의 취지와 앞서 본 사법절차에서의 편의제공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를 고려하면, 입법을 통하여 이해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방청인에 대한 수어통역 신청권을 인정하고 비용도 국고부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2006년 이계진 의원안 제출 당시 방청인 수어통역 예산소요액이 연간 2,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계 되어[(임형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진 의원, 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07. 2), 6-7면]. 예산상 부담이 크지도 아니함. 법원이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법접근성 보장 에 나선다는 면에서 상징성이 큰 조치가 될 수 있음.
- 방청인 수어통역에 대한 명시적 입법이 없어도 수화통역 비용 일반이 국고부담화되면 사실상 방청인에 대한 수어통역 비용 부담도 국고부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이기 함. 현행법 해석상으로도 방청인에 대한 수어통역 방청 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장애인권리협약의 편의제공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여지도 적지 않고, 실무상 소송당사자가 아닌 방청인에게 별도 비용을 징구하 기도 절차상 쉽지 않아 비용도 사실상 국고부담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임.
- 방청인 수어통역문제를 일반적인 수어통역비용 등 국고부담화 입법제안과 동시에 추진할지, 별개로 추진할지는 정책결정의 대상임. 발제자의 의견은 수어 통역비용 국고부담화 입법안을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하고, 앞서 살펴본 민사 소송법상 통역과 (문자통역방식의 속기사를 활용한) 속기 수준에 이르지 않은 청각장애, 언어장애 및 기타 의사소통 장애를 다른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에 관한 조항과 방청인에 대한 수어통역 등에 관한 조항을 묶어서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동시에 입법을 추진하는 것임.
-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모든 법원의 사법절차를 아울러 의사소통 장애와 관련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법률개정을 핑계로 법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대법원 규칙 개정방식도 제안함. 대법원 규칙안 입법방식은,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규칙에 두고 다른 절차에서 준용하도록 하는 방식과 청각장애 외에 다른 여러 장애유형을 모두 다루는 포괄적인 장애인사법지원규칙을 제정하여 그 중 하나의 조항을 두는 방식의 2가지 방식이 가능함.
- 후자의 경우 제2기 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 규범팀에서 장애인사법지원규칙 제정안을 만들어 1차 검토를 마쳤고, 2019. 11. 29. 제2기 장애인사법지원연구



반 전체회의에서 추가검토가 예정되어 있음. 청각장애 의사소통 문제는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다루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후자의 안을 1안으로, 민사소송규칙이나 형사소송규칙 등에 관련규정을 두는 것을 2안으로 제시함.

6. ‘장애로 인한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를 특정하는 용어의 선택 문제

-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하여 외국어 통역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통역인, 통역 개념에서 수어통역 등을 분리해 낼 때 그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됨.
- 제1안으로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제2안으로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기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를 가진 사람 (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을 위한 통역... 등이 용어 사용이 가능함. 일단 아래와 같이 장단점을 각각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운용상, 또 해석상 실질적인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일단 이 보고서에는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화 방안에서는 민사소송법의 통역에 관한 현행 조문을 존중하여 1안을 채택하여 개정안을 제시하였고, 민사소송절차 뿐만 아니라 모든 절차를 포괄해야 하며 또한 통역 수준에 이르지 않은 다양한 다른 의사소통 수단을 포괄해야 하는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일반에 관한 입법안(청각장애인 방청인에 대한 의사소통지원 입법안 포함)에서는 2안을 채택하여 입법안을 제시함.
- 아래 표와 같은 4가지 선택 가능성이 있음. 일단 이 글에서는 아래 표에서 조합 1에 따른 방식으로 입법안을 제시함. 나머지는 발제자가 후순위로 고려한 조합을 우선순위에 따라 제시함. 조합 4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안이나 조합의 모든 가능성은 일단 모두 제시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어서 일단 제시함. 변경하는 경우 개정안에서 해당 부분만 변경하면 됨.

	수어통역비용 등 국고부담화 입법안	의사소통 지원 일반 입법안(방청인 포함)
조합 1	1안: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	2안: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기타...
조합 2	1안: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	1안: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
조합 3	2안: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기타...	2안: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기타...
조합 4	2안: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기타...	1안: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

<1안>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장점**: 민사소송규칙의 제정근거(민사소송규칙 제1조 참조)가 되는 상위 법률인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1항 표현과 최대한 일치시킬 수 있음. 또한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다’는 표현은 청각장애, 언어장애와 기타 의사표현을 주고받는 의사소통과 관련된 다양한 기타의 장애를 포섭할 수 있는 포괄적 표현임.

민사소송법 제143조(통역)

①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단점**: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는, 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등의 명칭이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통상적으로 쓰임. 외국인도 (국어로)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오독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옴. 다만 민사소송법 제143조에서 외국인을 염두에 둔 우리말을 하지 못한다는 별도의 표현을 명확히 쓰고 있어서 실제로는 그런 우려는 매우 작아 보임.

-**규범형식에 따른 장단**: 민사소송법 상 통역 규정과 관련하여 정해지는 민사소송규칙이나 그와 유사한 통역 관련 형사소송규칙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한 표현임. 그러나 수어통역 뿐만 아니라 통역 수준에 이르지 않은 다양한 의사소통 지원수단을 포괄하는 일반 조항을 법원조직법이나 별도 대법원규칙에 신설하는 입법안에는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음.

<2안>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기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을 위한⁶⁾” 통역...

6) 그 외에 “장애인을 위한” 통역이라는 표현이나, “장애인의 의사소통, 정보접근을 위한”이라는 표현도 검토함. 전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규정에서 장애유형을 특정하지 않고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태도(제20, 21, 23조 및 사법절차 편의제공 관련 제26조)와 일치하는 장점은 있으나, 너무 포괄적이어서 장애인이 통역을 받기만 하면 그것이 장애의 특성과 무관해도(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지적장애인을 위한 속기, 녹음이나 외국어 통역 등)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음. 후자도 장애의 유형이 한정되지 않음으로서 전자와 마찬가지로 비판이 나올 여지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사소통, 정보접근을 위한”이라는 표현이 포괄적이기는 하나 예상치 못하게 제한적 의미로 운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존재함.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2.10.22>

- **장점:** 장애 관련 입법에서는 청각장애, 언어장애이라는 용어가 더 자주 사용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 5호 등7). 또한 사법기관에게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유무의 확인의무를 지우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을 이용하여 청각장애, 언어장애와 유사한 기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장애를 포섭할 수 있음. 기본적인 청력과 언어능력이 장애라고 부를 수준에 달하지는 않았지만 아스퍼거 증후군, 조울증 내지 양극성 정동장애, 발달장애 등과 같은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 위한 통역, 속기, 녹음, 녹화 등도 사안에 따라 포섭이 가능해 보임.
- **단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 5호의 기준에 달하지 않는 청각장애, 언어장애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의사소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고, 다른 장애와 중복되어 청각장애, 언어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요건에 한정된다는 오해를 줄 소지가 다소 있음. 다만, 장애 관련 법령에서도 명시적으로 다른 법령을 원용하지 않는 한 장애 개념을 개별법에서 각자 하위입법이나 해석을 통해 정하고 있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을 직접적으로 원용하지 않는다면

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4. 청각장애인(청각장애인)

-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언어장애인)

-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실제 그렇게 좁게 해석될 가능성은 낮음. 그리고 기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라는 표현이 그럴 위험을 막아준다는 반론이 가능함.

-**규범형식에 따른 장단:**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사소통, 사법절차에서의 편의제공의 포괄적 방식을 고려할 때, 수어통역 뿐만 아니라 통역 수준에 이르지 않은 다양한 의사소통 지원수단까지 포괄하는 일반 조항을 법원조직법이나 별도 대법원규칙에 신설하는 입법안에 적합한 면이 큼.

III. 민사절차(준용되는 가사, 행정 절차 등 포함) 수어통역비용 등 국고부담화 입법안

1. 수어통역비용 등 국고부담 원칙과 그 지급기준에 관한 개정안

가. 법률개정안과 민사소송규칙 개정을 병행하는 방안

1) 장정숙 의원안

민사소송법 제116조(비용의 예납)

- ①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 ②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조항>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통역·속기·녹음 등에 드는 비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2) 필자의 수정제안(민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규칙 개정안)

<개정안>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3항 신설 개정안>

민사소송법 143조(통역)

- ①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② 통역인에게는 이 법의 감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조항>



③ 제1항의 통역인 중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에게
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하고 통역
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
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5항 신설 개정안>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
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
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은 조서의 일부로 삼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으로 조서의 기재
를 대신한 경우에, 소송이 완결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그 밖에 대
법원규칙이 정하는 때에는 녹음테이프나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양 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폐기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조항>

⑤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녹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규칙 개정안>

<신설조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의2 (장애로 인한 통역비용 지급기준)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3항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
역인에게 지급할 여비, 일당 및 숙박료는 민사소송비용규칙에서 통역인에 대
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민사소송법 개정안 제안 이유>



-
- 앞서 살펴본 원칙에 따라 장정숙 의원안에 크게 3가지의 수정을 가함.
- ① 당사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취지의 표현을 없애서 변론에 참여하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② 특정 비용의 소송비용 여부를 명시한 조항(민사소송법 제62조 특별대리인 비용,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4조 참고인 수당), 국고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지급근거만 규정하고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조항(동법 제164조의4 전문심리위원 수당), 민사소송비용법(제4조)과 통번역예규(제9, 10조)의 구체적 통역비용 항목(통역료, 여비, 일당 및 숙박료)에 관한 조항을 참고해 표현 정리.
 - ③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녹음 등 비용의 국고부담 조항은 속기, 녹음에 관한 조항(민사소송법 제159조)에 별도 ‘항’으로 신설함. 속기, 녹음의 경우 별도의 외부의 인력을 이용하지 않고 법원 내부의 인력과 시설을 이용하므로 외부 인력에게 비용을 지불할 일이 현재 실무관행 상으로는 일단 없어서,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녹음을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아니하고 “국고에서 **부담한다**”고만 규정함. 다만, 장애에 문자통역을 위한 실시간 속기를 법원 내부에서 고용한 속기사 인력이 아닌 외부의 문자통역 인력을 문자통역인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 정책변화가 이뤄질 경우 비용지급 기준을 대법원규칙이나 법원(개별 재판부로서의 법원)이 정하여 문자통역인에게 지급하는 식의 추가 개정이 필요해질 수는 있음. 그 지위를 통역인에 준할지, 별도의 다른 형태의 재판보조인력을 신설할지도 그 경우 정책판단이 필요할 것임.
- 주의할 점은, 기존의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통역의 여러 비용 항목 중 ‘① 여비, 일당 및 숙박료’는 민사소송비용법상 그 최고액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민사소송비용법 부칙 <제336호,1954.9.9> 제17조), 민사소송비용규칙에서 규정하나, ② 통역에 관한 특별요금, 즉 통역료는 법원(개별 재판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대법원규칙에서 그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법규 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은 지니지 않는 내부의 재판예규 형식인 통번역예규로 정하여 각 개별 법원(재판부로서의 법원)에 일정한 기준을 권고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임. 거의 모든 재판부가 재판예규가 설정한 표준을 존중하는
-



것이 실무이므로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음. 다만 재판부가 구체적 사정을 들어 통역료를 통번역 예규와 달리 정할 권한이 인정된다는 정도의 차이인데, 그런 예외적 경우는 매우 드물 것으로 생각됨.

- 국고부담으로 지급하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비용도 이런 이원적인 체계를 존중하여, ‘여비, 일당 및 숙박료’는 대법원규칙으로, ‘통역료’는 법원이 그 지급기준을 정하도록 함. 기존 법령에 의한 통역료 지급 체계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하위 입법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음.8)

8) 입법안 작성 시 참조한 법령의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62조(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⑤ 특별대리인의 보수, 선임 비용 및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소송 비용에 포함된다.

제143조(통역) ①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64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②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민사소송비용법>

제4조(증인, 감정등에 대한 일당, 여비등)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은 1일 70원 이내,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는 2등 이하의 차임 또는 선임, 기차 없는 육로에는 4킬로미터에 5원 이내, 숙박료는 1박에 240원 이내의 한도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한다. <개정 1962.7.31>

제6조(감정등에 대한 특별요금)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에 의한다.

부칙 <제336호, 1954.9.9>

제17조 본법에 규정한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 기차없는 육로여비와 숙박료의 최고액은 경제사정의 변동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증감할 수 있다.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증인등의 일당)

- ①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 ② 증인등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제3조의2(증인등의 국내여비·숙박료)

- ① 증인등의 여비는 운임과 식비로 한다.
- ② 증인등의 국내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4종으로 구분하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 ③ 증인등의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④ 증인등의 국내운임,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06.6.14, 2009.1.9>

제3조의3(증인등의 국외여비·숙박료)

- ① 증인등의 국외여비 및 숙박료는 증인등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국내로부터 국외로 여행하거나 또는 국내로 입국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여행(이하 이를 합하여 "국외여행"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지급한다.
- ② 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되, 통행세를 가산한다. <개정 2006.6.14>



<민사소송규칙 개정안 제안 이유>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수어통역인 등)에 대한 여비, 일당 및 숙박료 지급 기준은 외국어 통역에 준하는 것으로 하여 민사소송비용규칙에서 통역인에 대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따로 수어통역 등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만들지는 아니함.
- 법원이 정하는 통역에 관한 특별요금, 즉 통역료는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와

1. 철도운임 및 선박운임은 그 운임에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등급 이하의 운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승차나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2. 자동차운임은 실비액
3. 항공운임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2조제2항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에 정한 기타의 자 소정액

③ 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식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6조제1항의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별표 1의 제2호 나목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개정 2006.6.14, 2009.1.9>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04-5)>

제9조 (통역·번역 수당 등 지급) ① 통역인에게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통역인이 출석하였으나 통역인의 귀책사유 없이 통역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
 - 가. 여비 및 숙박료
 - 나. 일당
2. 통역인이 출석하여 통역이 행하여진 경우
 - 가. 여비 및 숙박료
 - 나. 일당
 - 다. 통역료

제10조 (통역·번역료 산정 기준)

통역·번역인에게 지급할 통역·번역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통역료는 실제 통역에 소요된 시간을 기초로 30분 단위(30분씩 끊어 남는 부분은 이를 30분으로 본다)로 산정하되, 최초 30분에 대하여는 70,000원, 이후 추가되는 30분에 대하여는 매 30분마다 50,000원을 지급하고, 판결의 선고에만 입회한 경우 그 시간이 30분 미만일 때에는 50,000원을 지급하고 30분 이상일 때에는 위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 예정된 시간보다 절차가 늦게 진행되는 등의 사유로 통역인이 법정에서 대기하게 된 경우 그 대기 시간을 고려하여 통역료를 증액할 수 있다.
2. 번역료는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기준으로 함)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하되,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을 지급한다.
3. 재판장은 통역 및 번역의 난이도, 통역인 및 번역인의 전문성 정도 또는 통역이나 번역의 수준 등 사정을 감안하여 통역료 및 번역료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4. 재판장은 제1, 2호의 기준을 참작하여 여비, 일당, 통역료, 번역료 등을 포괄한 정액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규칙>

제4조(수당 등) ⑥ 전문심리위원의 수당,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1>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4조(참고인의 지정 등) ⑥ 참고인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판부가 금액을 정하여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 한다. 그 밖에 기일통지 등 참고인의 진술에 필요한 절차비용도 국고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7.12.27>

(※ ‘아니한다’ 띄어쓰기 문제: 종합법률정보 등의 본문에서 나오는 제1항의 “아니 한다”는 띄어쓰기 맞춤법에 의하면 ‘아니한다’가 맞고 민사소송법 등에서도 ‘아니한다’로 붙여쓰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동일하게 제안된 민사소송법 개정안 제143조 제3항에서 직접 법원이 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른 통역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대법원 규칙의 매개 없이⁹⁾ 바로 법원(재판부로서의 법원)에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재판예규인 통번역 예규(제10조)의 기준에 따르게 될 것이므로 별도의 규정을 민사소송규칙에 두지는 아니함. 참고로 통번역 예규는 민사절차에도 적용됨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2017), 468면].

- 추가적인 대법원규칙, 재판예규 개정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외국어 통역과 수어통역비용 등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기존 규범체계를 유지함. 다만 장래에, 수어통역비용 등에 관한 비용 지급 기준을 외국어 통역과 달리 정하는 식으로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만드는 추가적 개정이 필요할 수 있음.

나. 법률개정 없이 대법원규칙(민사소송규칙)만 개정하는 방안

<개정안>

<민사소송규칙 개정안>

<신설조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의2 (장애로 인한 속기, 녹음 및 통역비용)

- ①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녹음 및 제37조에 따라 녹음에 준하여 이루어지는 녹화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에게는 민사소송비용규칙에서 통역인에 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하고 통역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안 이유>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개정이 가장 이상적이나, 법률 개정 전이라도 대법원 규칙으로 수어통역비용 등 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비용규칙에는 통역료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함.



- 법률 개정 없이 규범조화적 해석으로 도출되는 수어통역비용 등 국고부담 원칙을 확인하는 확인적 규정을 하위 입법인 대법원 규칙인 민사소송규칙에 두는 방식임. 당초 제2기 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 회의에서는 재판예규 형식인 통번역 예규 제9조10)에 수어통역비용 등 국고부담 원칙을 신설하는 안을 제안한 적이 있으나, 규범형식이 낫다는 비판이 있었고 통번역 예규 개정으로는 속기, 녹음 비용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곤란한 면이 있어 포기하고, 대법원규칙인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제시함.
- 여비, 일당 및 숙박료 기준은 민사소송비용규칙의 통역인에 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통역에 관한 특별요금, 즉 통역료는 법원이 정하도록 하여 통번역 예규(제10조)에 따르도록 함[위와 같이 한 자세한 이유는 바로 위의가. 부분의 <민사소송규칙 개정안 제안 이유> 부분 참조]

※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녹화를 포함시킨 이유

- 변론의 녹음이 아니라 녹화 방식을 쓰는 것도 민사소송규칙 제37조11)에서 규정하고 있고, 녹음에 비용이 필요한 경우 예납시키는 제33조 규정을 녹화의 규정에 준용하고 있음. 따라서 제19조 제1항 제2호의 녹음은 녹화가 될 수도 있음.
- 특히, 통번역 예규 상 외국인 피고 사건의 경우 통역 녹음을 의무적인 것으로 정하고(13조 제1항), 통역에 관한 이의 시 녹음물을 통한 확인절차를 규정(제14조)한 취지 상¹²⁾, 수어통역이 이뤄지는 변론은 정확성 등의 확인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 녹음이 아닌 녹화가 활용될 여지가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커 보임. 따라서 녹화 부분도 명확히 해결해둘 필요가 있음.

2. 민사절차의 소송비용 개념에서 수어통역비용 등을 제외하는 개정안(예납의무)

-
- 10) 당초 제9조 제2항으로 제안했는데, 종합법률정보의 현행 통번역 예규 본문에서 제9조 제2항이 누락된 것을 간과한 제안이었음. 만약 통번역 예규 제9조에 국고부담 원칙 조항을 신설한다면 제9조 제3항에 신설하는 제안을 해야 했어야 함.
- 11) <민사소송규칙 제37조(준용규정)>
- ① 녹화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하여 변론의 전부나 일부를 녹음 또는 녹화하는 때에는 제33조 내지 제36조 및 법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는 제31조 내지 제36조 및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12) 다만 재판예규라는 형식의 한계로 법령상 재판장의 녹음에 관한 권한을 법령상의 근거 없이 제한하기는 어려워, 법적 구속력이 논란이 될 수 있음. 원활할 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사법행정 차원의 표준적인 권고 사항 정도로 판단됨.
-



배제 포함)

가. 민사소송비용법 개정안

<개정안>

<민사소송비용법 제4, 6, 11조, 부칙 <제336호,1954.9.9> 제17조 개정안>

제4조(증인, 감정인등에 대한 일당, 여비등)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을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법률 안에서 같다)과 번역인의 일당은 1일 70원 이내,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는 2등 이하의 차임 또는 선임, 기차없는 육로에는 4킬로미터에 5원 이내, 숙박료는 1박에 240원 이내의 한도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한다. <개정 1962·7·31>

제6조(감정등에 대한 특별요금)

감정, 통역(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을 제외한다),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에 의한다.

제11조(비용의 지급)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 여비와 숙박료 기타 필요한 비용은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지급한다.

부칙 <제336호,1954.9.9>

제17조 본법에 규정한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 기차없는 육로여비와 숙박료의 최고액은 경제사정의 변동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증감할 수 있다.

<제안 이유>

- 민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또는 별개로 민사소송비용법 상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비용은 소송비용에서 제외됨을 확인적 차원에서 명시함.
- 민사소송비용법 제4조, 제11조, 부칙 <제336호,1954.9.9> 제17조 중 “통역인”에서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을 제외하고,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중 “통역”에서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을 제외함. 제4조에서 통역인 개념을 개정하고 이를 제6, 11조, 부칙 <제336호,1954.9.9> 제17조에도 적용하는 형태를 취함(‘다음부터 이 법률 안에서 같다’는 표현은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등에서 쓰는 표현을 활용



함). 통역은 제6조에서만 쓰이는 표현이어서 그와 같은 표현이 불필요함.

나. 민사소송규칙 제19, 33조(예납 관련),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 개정안

<민사소송규칙 개정안>

제19조(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

① 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 소송행위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송달료는 원고(상소심에서는 상소인을 말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

2.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녹음 및 제37조에 따라 녹음에 준하여 이루어지는 녹화를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 다만, 직권에 의한 속기 또는 녹음의 경우에 그 속기 또는 녹음으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3. 증거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통역인(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을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 등에 대한 여비·일당·숙박료 및 감정인·통역인 등에 대한 보수와 법원 외에서의 증거조사를 위한 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여비·숙박료는 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 다만,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의 경우에 그 증거조사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4. 상소법원에 소송기록을 보내는 비용은 상소인

② 제1항제2호의 속기 또는 녹음, 제1항제3호의 증거조사를 양쪽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와 제1항제4호의 상소인이 양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균등하게 나누어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미리 낼 금액의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33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① 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의 신청은 변론기일을 열기 전까지 하여야 하며, 비용(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또는 녹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이 필요한 때에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 ② 당사자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 또는 녹음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판장은 변론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비용규칙 개정안>

제3조(증인등의 일당)

- ①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을 제외한다)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 ② 증인등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IV. 형사절차 수어통역비용 등 국고부담화 방안

1. 형사소송비용에서 수어통역비용 등이 제외됨을 명시하는 개정안

가. 법률 개정안

<개정안>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개정안>

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증인·감정인·통역인(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을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2.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그 밖의 비용
3. 국선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

<제안 이유>

- 형사소송법 제181조에서는 “농자 또는 아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위 표현은 다른 장애 관련 법령 등에서 잘 쓰이지 않는 표현임. 그 취지는 민사소송법상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과 같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사절차에서의 개정안에서 사용한 표현을 똑같이 사용함.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 결정을 통하여 앞서 설명한 <2안>을 택하는 경우,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기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를 가진 사람 (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을 위한 통역인”이라는 표현, 이후에는 축약된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통역인”이라는 표현을 민/형사절차에서 통일하여 사용하면 됨.

- 형사소송법 제181조(농아자의 통역)나,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근거 규정들(제186 내지 190조)에 수어통역 등 장애인 통역비용은 피고인 등에게 부담시키는 형사소송비용에서 제외된다거나 국고부담이라는 취지를 앞서 제시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처럼 명시할 것인지가 문제됨. 형사절차의 경우 수어통역비용 등을 포함한 비용은 이를 피고인 등에게 부담시키는 별도의 결정이 없으면 국고부담임. 따라서 미리 수어통역비용 등이 국고부담이라고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것은 어색함. 그보다는 피고인 등에게 부담시킬 형사소송비용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수어통역비용 등을 제외하면 족함. 그런 이유로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만 제시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제시하지 아니함.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소송비용을 피고인 등에게 부담시키는 결정이 없어 일당, 여비 및 숙박료,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그 밖의 비용이 형사소송비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증인, 감정인, 통역인, 감정인에게 지급하는 기준과 절차과 관련하여 여전히 적용됨. 그래서 입법목적 상 ① 형사소송비용의 범위와 ②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그 두가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음. 따라서 제2조 형사소송비용의 범위에 관한 조항의 통역인의 범위에서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을 제외하면 족함. 따라서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고 규정하여 그 개정범위를 제2조로 한정함.

나.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법률개정 없이 시도 가능함)

<개정안>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신설안>

제7조(통역인 관련 형사소송비용의 범위)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통역료 및 그 밖의 비용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2호에서 정한 통역



인에 관한 형사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안 이유>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개정이 가장 이상적이나, 그 전이라도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에 규범조화적 해석 결과 피고인 등에게 부담시키는 형사소송비용 범위에서 수어통역비용 등은 제외된다는 취지를 확인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음.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의 통역인 개념에서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을 제외할 필요는 없음.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에는 형사소송비용의 범위를 정하는 의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제1조(목적)에서는 형사소송비용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함.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는 피고인 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형사소송비용의 범위를 완결적으로 정하고 있고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대법원규칙으로의 위임규정을 두고 있는 나머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조항들(제3 내지 6, 8, 13조)은 지급절차·기준에 관한 내용에 불과함. 지급기준과 절차의 근거규정을 살려둔다는 점에서도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의 통역인 개념에서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을 제외하여서는 안됨. 앞서 살펴본 이유에서 수어통역비용 등이 형사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은 그 지급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임.

※ 만약 앞서 살펴본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에 제7조를 신설할 필요는 없음. 중복되기 때문임.

다. 형사소송규칙 제122조2 개정안(재정신청 소송비용 부담 관련)

<개정안>

<형사소송규칙 제122조2 개정안>

제122조의2(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법 제262조의3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증인·감정인·통역인(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을 제외한다)·번역인에게 지급되는 일당·여비·숙박료·감정료·통역료·번역료
2. 현장검증 등을 위한 법관, 법원사무관 등의 출장경비
3. 그 밖에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법원이 지출한 송달료 등 절차진행에 필요한 비용

<제안 이유>

- 재정신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제1항13)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형사소송규칙 제122조2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장애인 권리협약, 한국수화언어법의 수어통역비용 등의 국고부담원칙에 관한 내용은 재정신청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것과 유사한 개정안을 제시함.

2. 수어통역비용 등 지급기준, 절차에 관한 개정안의 제안 필요성

- 없음.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은 어떤 비용이 형사소송비용에 포섭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지급기준,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기 때문임.
- 다만, 통역료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민사소송비용법(제6조)과 유사하게 대법원규칙에 위임하지 않고 법원(재판부로서의 법원)에서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여, 통역료 지급기준은 대법원규칙이 아닌 통번역 예규(제10조)의 적용을 받게 됨.

13)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비용부담 등)

- ① 법원은 제262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264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V. 청각장애 등 의사소통 장애 일반에 관한 입법안(방청인 문제 포함)

1.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제57조의2(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

- 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기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은 법원의 사법절차에서 그 선택에 따라 수어통역, 농통역, 문자통역을 위한 실시간 속기,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기타 보조인력, 문자, 구화(口話), 보청기, FM 수신기, 안구마우스,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적 보조장치 또는 기타의 적절한 의사소통방식(2가지 이상의 방식을 선택하여 병행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사소통한다. 법원은 의사소통방식에 대한 위의 선택권을 청각장애인 등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청각장애인 등이 제1항의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또는 제1항에 따라 청각장애인 등이 선택한 의사소통 방식을 통하여서는 충분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거나 과도한 부담을 통하여만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최선의 의사소통 방식을 통한 의사소통을 명할 수 있다.
- ③ 청각장애인이 법원의 사법절차에서의 방청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의사소통방식의 지원을 원하는 경우 방청하고자 하는 기일이 되기 7일 전까지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위 신청기한이 지나 신청된 경우에도 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위 기일 전까지 의사소통 지원의 준비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의사소통방식 중 수어통역, 농통역, 문자통역(이하 이 조문 안에서 ‘수어통역 등’이라 한다)을 담당하는 자의 선정, 구체적인 통역절차, 수어통역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권장되는 재판절차 진행방식 및 기타 제1 내지 3항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별도의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한다.¹⁴⁾
- ⑤ 제1, 3항에 따른 의사소통방식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14) 대법원규칙에 세부사항을 위임하는 조항은 아래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항의 표현방식을 참조함.

민사소송법 제128조(구조의 요건)

-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증명하여야 한다.
- ③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안 이유>

○ 법원조직법 개정의 필요성과 조문의 위치와 제목

- 모든 법원의 절차에 적용되는 일반조항으로서 성격을 가지므로 특정 소송절차법이 아닌 보다 일반적인 상위의 법률인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택함. 독일 법원조직법에서 청각장애, 언어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의사소통방식에 관한 일반조항을 두고 있는 것을 참조함. 법원조직법 내에서의 위치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공개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57조¹⁵⁾ 다음이 가장 관련성이 큰 것 같아 제57조의2로 하고, 조문 제목은 ‘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이라는 표현을 씀.

독일 법원조직법 제186조

(1) 심리(Verhandlung)에서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의사소통(Verständigung)은 그의 선택에 따라 구두로, 문자로(서면으로, Schriftlich) 또는 법원에 의하여 지정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람의 도움으로(mit Hilfe einer die Verständigung ermöglichenden Person) 이루어진다. 구두를 통한 또는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법원은 적절한 기술적 보조장치(die geeigneten technischen Hilfsmittel)를 마련하여야 한다.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은 이러한 선택권에 대하여 고지 받아야 한다.

(2) 법원은,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이 제1항의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또는 제1항에 의하여 선택된 형식을 통하여 충분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거나 과도한(unverhältnismäßig, 지나친) 비용을 들여서만이 가능한 경우에는,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을 명하거나 통역인으로서 역할 하는 사람이 관여하도록 명할 수 있다.

15)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개시하여 선고한다.
-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

○ 청각장애인 등의 개념

- 앞서 살펴본 이유에서 제시한 2개의 안 중 2안을 1순위로 올려 조문을 구성함. 수어통역비용 등의 국고부담화에 관한 입법안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안으로서 민사소송법상 표현인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과 일치시키는 것이 의미가 크고, 또 수어통역비용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 통역 수준의 청각장애인 의사소통에 사실상 국한되는 의미가 커서 민사소송법상 통역에 관한 규정의 표현에서 너무 멀어지는 것이 부담되는 측면이 있음.
- 청각장애, 언어장애, 기타 의사소통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정하는 훨씬 더 포괄적 범위의 규정에서는 이에 민사소송법상 통역에 관한 규정의 표현에 국한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더 폭넓은 의사소통 수단을 예시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청각장애, 언어장애, 기타 의사소통 장애 등의 표현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

○ 절차의 범위: 법원의 사법절차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의 경우 ‘사법절차’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 장애인 사법지원규칙은 민사, 형사, 행정, 가사, 특허, 회생, 파산, 비송 등 일체의 법원 절차에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법원의 절차’라는 추상적 표현도 검토함. 그러나 재판과 연관된 법원의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모든 유형의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를 포괄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사법절차라는 표현을 쓰기로 함. 법원의 절차는 법원의 견학, 등기열람 등 재판과 무관한 행정절차의 경우까지 포섭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너무 넓은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그런 절차에서의 장애인 사법지원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님. 그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다른 관련 법령의 재판과 무관한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장애인 편의제공이 이뤄지면 족하다는 의미임.
- 참고로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관한 독일 법원조직법 제186조의 경우 앞서 소개한 조문 번역 상 ‘법원의 심리(Verhandlung¹⁶⁾)’이라는 표현을 씀. ‘심리’나 ‘심리절차’라는 표현을 쓰는 입법방식도 고

16) “Verhandlung”은 변론, 심리 등으로 번역된다. 변론은 넓게는 소송의 주체가 기일에서 하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말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고, 판결 선고 등 법원의 소송행위를 제외한 당사자의 소송행위와 법원의 증거조사를 의미하는 보다 좁은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고, 가장 좁게는 증거조사를 제외한 당사자의 소송행위만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변론은 마

려될 수 있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와 같은 사법절차 일반에서의 편의 제공에 관한 포괄적인 일반규정이 없는 독일과 달리, 한국은 위 제26조에 의하여 사법절차에서의 의사소통지원을 포함한 편의제공이 이미 의무화되어 있음. ‘사법절차’보다 적용범위를 좁히는 식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는 ‘심리’나 ‘심리절차’라는 표현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음. 예를 들어 판결 선고나 결정이나 명령의 고지나 그와 수반된 재판부의 진술이나 참석한 소송관계인 등과의 의사소통도 심리나 심리절차에 포섭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불필요한 해석상 논란의 발생 여지를 차단하려면 사법절차라는 포괄적 표현을 명시적으로 쓰는 것이 나아 보임.

○ 적용의 인적 범위를 소송당사자에 한정하지 않음.

-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사법에 대한 접근) 제1항은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지 위하여”라고 하여, 사법절차상 편의제공의 대상자가 소송당사자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당초 법안 제57조의2 제1항에, “그 절차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함. 그러나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그런 표현이 불필요한 해석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삭제함.

○ 의사소통 수단의 예시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동법 시행령¹⁷⁾, 2012년 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에 관

지막의 최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변론으로 번역하는 경우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통역이 필요한 절차의 범위를 매우 좁은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어, 심리라는 번역어를 택하였다. 위 심리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이하 해당 부분에서 서술한다.”[차성안, 독일의 장애인 사법지원, 사회보장법연구 제5권 제2호, 48면의 각주 11]

1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2.3, 2017.12.19>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 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 정책 연구 용역 결과물의 별지 규칙안 표현 참조.

- 음성통역자(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2항)나 음성통역사(동법 시행령 제2항 14조 제2호)라는 표현은 일단 제외함. 음성통역이 수화를 음성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면 수어통역의 개념에 포섭되므로 일단 제외하였는데 더 확인 요.
- ‘한국수어 통역’이라는 표현에서 ‘한국’은 일단 제외함. 미국 수어 등 외국인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나라의 수어를 사용할 가능성 등도 고려함. 한국수어 통역이라고 쓴다고 하여 외국의 수어통역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함.
- 농통역,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기타 보조인력, 문자, 구화, 보청기, FM 수신기, 안구마우스,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적 보조장치 등 다양한 예시를 일단 다 포함시킴. 구화(口話)는 한자를 병기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한자를 병기함.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9호·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3, 2017.9.19>
- 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16.2.3, 2017.12.1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연혁판례문헌

-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한국수어 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한국수어 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 기타의 적절한 의사소통방식이라는 포괄조항을 두어 새로운 의사소통방식의 발전에 대비함. 밀출친 부분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동법 시행령 등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이기는 함. 독일처럼 기술적 보조장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인력 등으로 장치와 인력을 통일해 버리는 방식도 가능함. 일단은 다 적어둠. 토론 필요.

○ 장애인의 선택권의 보장과 제한

- 독일 법원조직법 제186조 제1, 2항의 구조를 참조하되 요건에서 비용부담 문제를 일단 빼고, 제한시 선택가능한 의사소통 수단에 대한 법원의 재량을 인정함. 이러한 재량 규정이 남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가능해서 토론이 필요함.
-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의 병행원칙을 선언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않고, 다만 병행하여 2가지 이상 의사소통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선택권 행사 범위임을 명시함. 표현은 일반적이지만 주로 염두에 둔 것은 문자통역과 수어통역임. “문자통역과 수어통역의 병행을 선택하는 등” 2가지 이상의 의사소통방식...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도 검토했다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이 일단 뺐. 다만 문자통역과 수어통역 병행 필요성과 그 가치는 매우 커서 원칙화하지는 못해도 예시로 이렇게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계속 들기는 함. 토론 요.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3조 제3항에 장애인 의사에 반한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강요 금지 조항도 참조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방청인에 대한 국고부담 형태의 수어통역, 문자통역은 명문의 규정을 둠

- 별도의 입법이 없이도 방청인도 사법절차의 직·간접적 참여자의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나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어서 명문으로 방청인에 대한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도 허용되고 그 경우에도 그 비용은 국고부담에 의한다는 명확히 함.
- 과거 소위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광주인화 학교 성폭력 관련 형사소송, 민사소송 절차에서 방청인에 대한 수어통역이 논란이 되어, 광주지방법원에서 내규 등으로 혹은 개별 법원에서 재판부의 결정으로 실무상 수어통역을 방청인에게도 제공했던 관행을 별도의 입법으로 확인하는 의미도 있음.
- 당초 제2기 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 규범팀에서의 초안에서는 “법원 심리의 방청”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앞서 심리, 심리절차라는 표현 대신 사법절차라는 표현을 썼던 것과 같은 이유에서 결정, 명령의 고지나 판결선고 등을 포함한 법원의 절차 일반에서의 방청을 포괄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해석 상 논란을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법원의 사법절차에서의 방청”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함.

○ 청각장애인 방청인 수어통역 요건으로 이해관계를 요구하지 않음.

- 비장애인의 경우 개별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도 헌법 상 판결과 심리의 공개주의에 따라 어떤 사건이든 자유롭게 방청이 가능한 것을 고려하여 청각장애인의 평등한 방청권 보장을 위해서 ‘이해관계’ 유무와 관계 없이 원하는 재판을 방청하여 수어통역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함.
- 청각장애인 방청인에 대한 수어통역 신청의 요건으로 ‘이해관계’를 요구하는 경우 비청각 장애인과 달리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큼. 참고로 앞서 본 것처럼 미국장애인법 등에서는 방청인에 대한 수어통역도 인정하는 추세임. 당사자나 증인 등을 위한 수어통역인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방청인에 대한 수어통역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예산소요도 크지 않음. 앞서 본 것처럼 과거 청각장애인 방청인에 대한 수어통역 관련 법안에서 소요 예산은 연간 2천만 원으로 추산됨.
- 현실적으로도 “이해관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개별 법관에게 이해관계 여부를 해석을 통해 확정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음. 이해관계를 요건으로 요구하는 경우 그 범위에 관한 판단을 두고 법원과 판사가 불필요한 비난에 직면할 수 있음.



○ 재판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청인 수어통역에 대한 대책 문제

- 재판 당일 또는 지나치게 촉박한 방청인의 수어통역 신청으로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못하거나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함. 다만 사전신청 기한을 넘겼어도 수어통역 제공이 재판에 지장을 초래함 없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함.
- 만약 사전신청 절차를 거쳤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으로 청각장애인 방청인에 대한 수어통역이 재판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다른 비장애인 방청인이 재판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법정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을 것임. 당연한 말이지만 방청인의 청각장애 유무를 가리지 않고 일반적 법정 질서유지권에 기한 방청질서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임. 다만 청각장애인을 차별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비장애인 방청인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법정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야 할 것임.

○ 방청인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 신청기한을 7일 전으로 유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행사에서의 수어통역, 문자통역,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의 필요한 수단 제공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이 정한 7일 전의 기한과 동일하게 신청기한을 정함.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 ④ 공공기관 등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행사 개최하기 7일 전 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기한이 너무 촉박한 것은 아닌지 문제제기가 2019. 11. 15. 회의에서 제기되었고, 실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럴 가능성이 있으나 10일, 2주일 등의 기한을 더 길게 설정하는 경우 지나치게 방청인의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기 쉬움. 방청인이 청각장애인인 경우 소송당사자, 증인, 감정인, 소송대리인, 전문위원 등이 청각장애인 경우와 달리 심리 진행 정보를 사전에 알기 힘들기 때문임. 따라서 일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



14조 제4항이 정한 7일의 기한을 유지함.

- 다만 실무운용상 법원이 청각장애 등을 가진 방청인에 대한 수어통역, 문자통역을 제공하는 것을 홍보할 때 가급적 7일보다는 더 길게 2~3주 가량 충분한 여유를 두고 방청에 대한 수어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을 요청하면, 더 원활한 통역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가능해 보임.
- 당초 1주일이라고 표현했으나, 위 시행령 표현에 따라 7일로 바꾸었고, 그 기산일이 기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방청하고자 하는 기일이 되기 7일 전까지”로 표현함.

○ 수어통역사, 문자통역사의 자체 조달 문제

- 당초 초안 제9조 제3항 제3문에서는 “심리 당일 방청인이 수어통역사나 문자통역사를 대동하는 등 스스로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 수단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방청인을 위한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그로 인하여 심리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되지 않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방청인에 대한 수어통역의 경우 통역사 자체조달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었으나, 2019. 11. 15. 회의에서 삭제의견이 많아 삭제함.
- 방청인 수어통역이 이뤄지는 경우 그 통역사 지정은 제3항 제1, 2문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놔두는 안임. 앞으로 법원이 수어통역사, 문자통역사 등의 인증제도나 기타 방식으로 어떻게 형성해나가는지에 따라 방청인 수어통역사의 당사자 자체 조달을 얼마나 관대하게 인정할지, 아니면 법원이 명단과 자격, 교육 등을 관리하는 공인 법정 통역사를 통한 통역 원칙을 강화할지가 달라질 여지도 있어 보임. 또 자체 조달한 통역사의 중립성, 정확성이 개별 사안에 따라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할 수도 있어 보임. 이 부분은 소송당사자, 증인, 감정인, 소송대리인, 전문위원 등의 참여자와 굳이 달리 정할 필요가 없이 재판실무와 판례의 형성에 맡겨두는 것이 일단 타당해 보이고, 나중에 문제상황이 발생하거나 구체적이고 명시적 입법필요성이 생기면 그 때 입법을 추진하면 족할 것으로 보임.
- 수어통역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방청인 수어통역사, 문자통역사 등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를 자체조달하는 경우 당초 초안에서는 제5항 단서에서 “다만 제3항 제3문에 따라 심리 당일에서의 스스로 의사소통 지원 수단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라는 규정을 두어 국고부담의 예외를 규정함. 그러나, 이 부분도 일률적으로 판단될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자체 조달 수어통역사나 문자통역사 등에 의한 방청인 통역이 타당하여 이를 허가하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에는 국고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여지도 있어 보임. 법적 근거 없이 장애인 편의제공 비용의 무상성 원칙을 깨뜨리는 비판을 초래할 여지도 커서 별도 규정을 위와 같이 두는 것이 굳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음. 따라서 이 부분은 제5항의 국고부담 원칙만 정하는 것으로 함.

○ 수어통역, 문자통역 방식, 기타 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함.

- 청각장애만 따로 분리하지 않고 포괄적 조항을 두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농통역, 문자통역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제4항에 별도의 조항을 두는 방식을 취함.
- 다만 수어통역, 문자통역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나머지 시행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기존의 민사소송규칙, 형사소송규칙, 가사소송규칙 등에 넣는 방식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대법원규칙으로 별도의 장애인사법지원규칙안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별도의” 대법원의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는 식의 표현을 강하게 사용함. 구체적으로 정할 내용으로는 2012년 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에 관한 정책 연구 용역 결과물의 별지 규칙안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임(ex. 위 별지 규칙안 제4장 제2절 수화통역 등 부분의 제44조【수화통역사의 지정】, 제45조【수화통역사에 대한 사전안내】, 제46조【수화통역사의 법정 내 위치】, 제47조【수화통역사의 질문권】, 48조【청각장애인의 수화통역사 교체요구】, 제49조【수화통역사의 비밀유지의무】, 50조【수화통역사 명부 조정】, 제51조【문자통역】, 제52조【FM수신기 등】, 제60조【수화통역사 출석확인】 등)
- 대법원규칙에서 정하기에 지나치게 기술적이거나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별도의 대법원예규로 따로 정하도록 재위임하는 것도 좋을 듯 함. 그 경우 기존의 통역예규의 청각장애인 부분을 확대하여 별도의 부분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방식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외국어통역과 수어통역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별도의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를 만드는 것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별도의 대법원예규로 따로 정한다”¹⁸⁾는 표현으로 재위임의 근거 규

18) 당초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것으로 하는 방안도도 검토하였다가 대법원규칙인 상업등기규칙 제68조(사



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별도의 대법원예규가 만들어지는 경우 기존의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04-5)(이하 ‘통번역 예규’라 한다)에서, 수어통역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농통역, 문자통역 등과 합쳐서 별도의 수어통역에 관한 대법원예규를 만들 필요가 있고, 그 대법원예규안도 별도로 작성하는 작업이 위와 같은 입법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이뤄질 필요가 있음.

2. 대법원 규칙 개정안

가. 장애인사법지원규칙 제정(안)

장애인사법지원규칙 제정(안)

제9조(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

- 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기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은 법원의 사법절차에서 그 선택에 따라 수어통역, 농통역, 문자통역을 위한 실시간 속기,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기타 보조인력, 문자, 구화(口話), 보청기, FM 수신기, 안구마우스,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적 보조장치 또는 기타의 적절한 의사소통방식(2가지 이상의 방식을 선택하여 병행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사소통한다. 법원은 의사소통방식에 대한 위의 선택권을 청각장애인 등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청각장애인 등이 제1항의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또는 제1항에 따라 청각장애인 등이 선택한 의사소통 방식을 통하여서는 충분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거나 과도한 부담을 통하여만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최선의 의사소통 방식을 통한 의사소통을 명할 수 있다.
- ③ 청각장애인이 법원의 사법절차에서의 방청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의사소통방식의 지원을 원하는 경우 방청하고자 하는 기일이 되기 7일 전까지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위 신청기한이 지나 신청된 경우에도 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위 기일 전까지 의사소통 지원의 준비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용자등록의 신청) 제2항에서 “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한 예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대법원규칙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한다고 위임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어 그에 따름.



- ④ 제1항의 의사소통방식 중 수어통역, 농통역, 문자통역(이하 이 조문 안에서 ‘수어통역 등’이라 한다)을 담당하는 자의 선정, 구체적인 통역절차, 수어통역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권장되는 재판절차 진행방식 및 기타 제1 내지 3항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별도의 대법원예규로 따로 정한다.
- ⑤ 제1, 3항에 따른 의사소통방식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안 이유>

- 앞서 제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하되, 제2기 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 규범팀에서 초안을 작성한 장애인사법지원규칙 제정(안)의 여러 조항들 중 하나로 제시함. 다른 여러 장애인사법지원에 관한 원칙, 신청, 제공절차, 다른 유형의 장애에 관한 조항들, 장애인 사법지원 관련 종합계획, 지원센터, 법관과 직원에 대한 연수와 교육 등의 조항들 중 제9조에 청각장애인 등에 관한 의사소통 관련 조항을 넣는 것으로 논의가 된 상황이라 제9조로 일단 제시함.
- 전체 장애인사법지원규칙 제정(안)은 2019. 11. 25.까지 1차검토를 마친 수정안이 제시될 예정인데, 예상대로라면 사법정책분과위원회 2019. 11. 27. 전체 회의 전에 별도 자료로 제공할 예정임.
- 법원조직법 개정안에서 대법원 규칙에 위임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규범형식이 내려진 것을 고려하여 대법원 예규로 정하도록 함. 기타 구체적인 설명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분 참조.

나. 민사소송규칙, 형사소송규칙 등 개정안

<민사소송규칙 제1조의2 개정안>

제1조의2(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

- 조문 내용은 장애인사법지원규칙 제정(안) 제9조와 동일함. 다만 민사소송규칙의 적용범위와 표현을 맞춘다면, 제1, 3항의 “법원의 사법절차”라는 표현을 “민사소송절차”로 변경할 수 있을 것임.

<형사소송규칙 제1조의2 개정안>

제1조의2(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



- 조문 내용은 장애인사법지원규칙 제정(안) 제9조와 동일함. 다만 형사소송규칙의 적용범위와 표현을 맞춘다면, 제1, 3항의 “법원의 사법절차”라는 표현을 “형사소송절차”로 변경할 수 있을 것임.

<제안 이유>

○ 민사소송규칙의 경우

- 변론에 관한 조항 앞부분에 “제28조의4(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¹⁹⁾로 넣는 방안을 먼저 검토함. 의사소통지원이 필요한 변론의 개념에 변론준비기 일이나 심문기일에서의 심리 일체를 포함한다는 해석이 타당해 보이나, 불필요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아예 없지는 않음. 모든 민사소송규칙이 적용되는 절차 일반에 적용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의미에서 제1조의2에 넣는 방안을 제시함. 다만, 앞서 살펴보았던 법원조직법의 개정이나 별도의 장애인 사법지원에 관한 대법원규칙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법체계적으로는 간결한 입법방식이고, 민사소송규칙이나 형사소송규칙 등에 다 집어넣는 방식은 번거롭고 중복되며 법체계상 균형 상 어색한 측면이 있음.

○ 형사소송규칙의 경우

19) 민사소송규칙

제5장 소송절차

제1절 변론

제28조(변론의 방법) ① 변론은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에게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1. 28.]

[종전 제28조는 제28조의2로 이동 <2007. 11. 28.>]

제28조의2(재판장의 명령 등에 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38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명령 또는 조치가 있는 후 바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1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07. 11. 28.>]

제28조의3(당사자 본인의 최종진술) ① 당사자 본인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최종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변론에서 이미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가졌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당사자 본인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 중 일부에 대하여 최종의견 진술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최종의견 진술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6. 29.]



-
- 조문 위치에 관한 설명, 법원조직법 개정방식 또는 별도의 대법원 규칙으로서 장애인사법지원규칙안 제정방식이 더 낮고 형사소송규칙에 넣는 방식이 어색하다는 점은 민사소송규칙안에 관한 설명과 동일함.